

# 베카리아

## 사형제 반대

### 1. 공리주의

처벌은 예방효과가 있음.  
그러나 예방효과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  
그러므로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노역형을 선택해야 함.

### 2. 사회계약

안전한 국가에 합의(일반의사의 감독 인정) → 형벌 인정  
그러나 사회계약의 내용에 생명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음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일반의사 = 개인의 자유 중 최소한의 봇만큼을 모은 것, 생명권 포함하지 않음.

### 3. 인도주의

사형은 폭력적, 야만적

# EBS/기출 심화 제시문

1.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지만 그 자체로 선은 아니며, 고통을 발생시키기에 필요악이다.
2. 사형은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사형제도 존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유용성(Utility=공리)이다.
4.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하며 강도보다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형은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전쟁행위와 같다.
5. 사형은 공동체 형성에 합의한 계약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정당하다.
6.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그 결과로서 정당화된다.
7.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형은 비인간적이므로 거부되어야 한다.
8. 사형은 본보기로서의 효용이 있긴 하나, 이것이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아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9. 형벌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0.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개인이 사회에 생명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형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은 한 국가가 한 시민을 죽이는 것이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이다.
11. 형벌의 크기는 범죄자의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한다.
12.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이다.
13.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형벌은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가진다.
14. 사형 집행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계약에 근거한다.
15.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 = 죄형 법정주의
16. 법은 각 개인의 자유 중에서 최소한의 뜻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17. 사형은 인간 개선 여부와 상관없는 국가의 일방적인 살인 행위이다.
18. 가혹한 형벌, 그러니까 사형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때 뿐이다.(=공리)
19. 형벌은 문서로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며(=죄형 법정주의) 범죄와의 비례를 반영해야 한다.
20. 국가의 형벌 집행권은 시민의 동의에 근거하지 않는다.  
= 사회 계약의 내용에 생명 양도권 포함되지 않음.

# 기출 선지 모음

[2015학년도 9평]

범죄 예방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强度)가 아니라 그 지속성이다.

범죄자의 사형 장면을 보는 것은 종신형과는 달리 범죄 억제에 일시적인 효과만을 갖는다.

ㄷ.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017학년도 6평]

형벌의 선한 결과가 형벌 자체의 악보다 크다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큽니다.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다.

[2017학년도 수능]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종신 노역)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ㄹ. 사형은 종신형에 비해 처벌의 사회적 효용이 낮은 형벌이다.

[2018학년도 6평]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ㄱ.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2018학년도 9평]

법은 특수 의사의 총합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할 수 없다.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전쟁 행위이므로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돼야 한다.

[2019학년도 9평]

공공 의사의 표현인 법은 살인을 증오하고 그 행위를 처벌한다. 살인범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범죄 억제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③ 사형은 살인범의 존엄을 지키지 않는 형벌이다.

[2020학년도 6평]

사형은 범죄자를 교정하기보다는 죽여서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한다. 범죄자의 지속적인 불행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형보다 강력한 인상을 준다.

ㄱ.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ㄴ.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대체할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

[2020학년도 9평]

형벌은 사회 계약에 기초하며 그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교화에 있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형벌은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①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 [2020학년도 수능]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고통의 반복적 인상에서 비롯된다. 시민들에게 범죄자가 노역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인 형벌이다.

- ㄱ. 형벌에게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 ㄴ.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은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가 아니다.
- ㄷ. 과도한 형벌은 효용 원리와 사회 계약 모두에 위배된다.

### [2021학년도 6평]

형벌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

### [2021학년도 9평]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수 없다. 사형은 결코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시민 한 사람과 벌이는 전쟁이다.

### [2021학년도 수능]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사형보다 고통이 길게 유지되어 오랫동안 본보기로 기능하는 형벌이 필요하다(=종신노역형)

### [2022학년도 6평]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을 규정해야 한다.

⑤ 사형제 존폐는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회 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 [2022학년도 9평]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반면,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 주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

⑥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이 아닌, 단지 범죄의 억제 수단이다.

### [2022학년도 수능]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 ㄴ.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ㄷ.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 [2023학년도 6평]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형벌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일반 시민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통제하여야 한다.

②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 [2023학년도 9평]

형벌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 사형은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해 벌이는 전쟁이다.

④ 공적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

⑤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는 동시에 범모지 억지력을 갖는 형벌은 허용될 수 있다.

### [2023학년도 수능]

법은 각자의 자유 중 최소한의 뜻을 모은 것으로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생명의 포기는 그 최소한의 뜻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①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주는 효과를 지니나 그 지속성에 있어 종신 노역형보다 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다.

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에도 있다.

### [2024학년도 6평]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으므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④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는 형벌권이 있다.

- 그러나 그 형벌권은 사형을 의미하지 않음.

-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권한은 사회 계약으로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속한다.”

**베카리아에게 있어서 입법자 = 주권자 = 대표자**

### [2024학년도 9평]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ㄹ.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 [2024학년도 수능]

법은 공공 의사의 표현이다.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처벌한다. 그런데 그런 법이 스스로 살인을 범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필요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사형제 반대)

ㄹ. 사회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 [2025학년도 6평]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사형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음을 드러냄으로서 나는 인도주의의 대의를 선취하고자 한다.

④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다.

- 사회 계약의 내용에 생명권의 양도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사형의 모든 과정에서 살인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

## [2025학년도 9평]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종신 노역형은 단지 한 범죄자만 있어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 [2025학년도 수능]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④ 사회 계약의 목적(계약자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모든 시민은 사형제에 동의할 수 없다. 사회 계약의 내용에 생명권의 양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